

#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전시 배제: 페미니스트 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

김지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1. 들어가며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1’)은 2022년 9월에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동 예술제에서 전시작가로 선정된 10인 가운데 작가 사랑해는 2022년 7월 16일에 사회적 신분과 사상을 이유로, 작가 치명타와 작가 이시마는 같은 달 18일에 사상을 이유로 작가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예술제 기획의도2)에 부합하는 성평등 관점의 시각예술창작물을 보유한 예술인”으로 선정되었지만, 동 예술제 준비를 위한 비공개 워크숍에서 했던 발언을 이유로 예술활동지원 및 전시 기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전시예정작품이 예술제의 기획의도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아니었고, 작가 개인이 특정 사회적 신분(성산업 종사자)과 사상(‘성노동’ 개념을 인정하는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다는 이유 혹은 그러한 신분과 사상이 향후에 표출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는 성평등전주 사업으로 수행되었고, 그 중 ‘전시’는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이하 ‘전여문’)가 용역을 받아 주관했습니다. 동 예술제는 특정 단체가 관의 지원을 받아서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 국비와 시비를 집행한 사업입니다. 즉, 작가 3인 배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

1) 2020년에 개최된 제1회 페미니즘 예술제 주제는 <재난, 여성, 일상>, 2021년 제2회 페미니즘 예술제 주제는 <F-연대기>, 2022년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주제는 <지구탈출>이었습니다.

2) 전시작가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기획의도 전문: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혐오로 점철되어 사회적 약자의 존재성 지워버리는 사회적 분위기, 예술이라는 명분으로 성적대상화를 침묵하는 창작방식, 더 이상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공세에 또 다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은 이 지구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순간마다 우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페미니즘이 기본 값인 안전하고 평등한 행성에 자리 잡는 모습을 말이죠.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검열하지 않아도 되고, 유리천장에 갇혀 허우적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당당하며 서로를 한없이 신뢰합니다.

‘성평등전주’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에 이 달콤한 상상을 한 스펀 넣 어보려고 합니다. 행성 3-4에서 페미니스트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구현하고, 작품 하나하나가 공간을 밝히는 예술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중력 우주를 유명하듯 자유롭게

끝없는 행성 사이를 모험하듯 희망차게

2022년 9월 페미니즘을 외쳐봅니다.

하는 예술지원사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작가3인 배제가 차별행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 2. 차별취급의 존재

이 사건에서 예술제에 참여작가로 선정된 작가 10인 가운데 특정한 사회적 신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작가 3인을 예술활동지원 및 전시 기회에서 배제한 것은, 그러한 신분과 사상을 표명한 바 없는 다른 참여작가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즉, 다른 참여작가들은 공고된 기획의도 및 지원심사기준에 따라 예술활동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작가 3인은 사회적 신분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공고된 지원심사기준과는 무관하게 해당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가. 작가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취급

사랑해 작가는 페미니즘 예술제의 1차 비공개 워크숍 중 전시장소인 구 성매매업소를 둘러보면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지우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라는 문구를 보았고, “기억공간”, “언니들(선미촌 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만든 공원”, “상생 의지” 등을 들었습니다. 사랑해 작가는 예술제 기획의도와 같이 전시장소를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공간이며 검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함께 전시를 하게 된 것이 성산업 내 당사자로도, 예술가로도 기쁘다”고 말했고, 방명록에 “성산업 종사자이자 예술가, 사랑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사랑해 작가는 홀로 불러나가거나 워크숍 종료 후에도 남아서, 작가로서의 작업 내용이나 방향과는 상관없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최측은 사랑해 작가에게 “성산업 종사자라는 말을 쓰셔서 놀랐다. 입장이 많이 다르신 것 같다. 보통 스스로 숨기려고 하고, 여기서는 성매매경험당사자, 성매매피해당사자라는 말을 쓴다”고 지적했고, 사랑해 작가는 “공간 이용자들이 불편하시다면 지우거나 수정해도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작가는 자신이 반성매매 운동에 반대하지 않으며, 폭력과 혐오 반대, 소수자의 생존과 감각에 관하여 작업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고, 기획의도와 같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지만<sup>3)</sup>, 전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3) 사랑해 작가가 2022. 7. 19. 성평등전주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 中

“당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성노동 운동과 반성매매 운동이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차별과 혐오와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고 으니까요.” (중략)

저에게 페미니즘은 ‘선불리 규정하지 않는 것’, ‘아무도 두고 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저에게 ‘피해자다운 피해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 안의 편견을 부수고 세상의 다양한 면을 바라보는 삶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당사자로서 발언을 하고, 예술을 합니다. 누구도 두고 가지 않기 위해서요. 모두의 손을 잡고 싶어서요.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 전시에서 누구도 검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작가는 스스로 성산업 종사자라고 밝혔다는 이유로 혹은 현재 성산업 내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로만 정체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사랑해 작가는 동 예술제에 참여한 이충열 작가의 작품 속에서<sup>4)</sup> 드로잉 작품과 ‘성노동자’를 포함한 5개 정체성단어들을 전시했습니다<sup>5)</sup>.

#### 나. 작가의 사상을 이유로 차별취급

작가 치명타는 페미니즘 예술제의 2차 비공개 워크숍에서 주최기관인 성평등전주 조선희 소장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세운 전주시혁신센터의 역사와 반성매매 운동을 설명하면서 “성매매업소 여성이 ‘성노동자’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하여, “반성매매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성매매업소 여성을 성노동자로 개념화하는 것에 다양한 맥락과 논의 지점이 있기에, 나는 노동자로 개념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작가 치명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최기관으로부터 “같이 전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전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작가 이시마도 2차 워크숍에서 작가 치명타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이슈에 관한 페미니즘 논의에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고 성노동자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전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시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성노동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성평등전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당 공간의 역사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전주는 지속적으로 작가의 사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작가 이시마가 추후 성노동 관련 작업을 할 경우에 이번 전시가 작가의 이력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3. 평등권 침해 여부

#### 가.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

4) <https://youtu.be/zqtQMjmfJCA> 이충열 작가 작품 설명: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유토피아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특정한 그룹이 배제하려 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초대했습니다. 지정성별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특히 아들을 낳은 ‘한남유충맘’이라 불리는 분, 자신의 노동을 성노동이라고 명명하는 분이예요. 그분들을 만나서 들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장 바닥에 텍스트로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위 공식영상 17분 50초부터)”

5) 사랑해 작가는 2022. 10. 17.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페미니즘의 단어도, 정체성의 단어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주최측은 오로지 ‘성노동관점’이라는 단어로 저를 규정하고 배제해버린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sup>6)</sup>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sup>7)</sup>.

평등권의 침해 또는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헌재 2008. 10. 30. 2006헌바35),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1144).

헌법재판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특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표현행위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봤습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참조). 따라서 작가 3인 배제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표현을 자유를 비롯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사상, 정치적 의견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헌

6)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전시작가에게 지원한 사항은 미술창작대가 지급, 전시 공간 제공, 포스터 및 팸플릿 제작, 언론보도 등입니다.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22. 9. 25.부터 시행된 까닭에,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법은 제8조 제2항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페미니즘 예술제는 국비와 시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해 성평등에 관심 있는 시민이 페미니즘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작가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동 예술제는 “페미니즘이 기본 값인 안전하고 평등한 행성”에서 “페미니스트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것을 기획 의도로 삼았습니다.

성평등전주와 전여문은 2022. 7. 22. 온라인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모집 공고에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반성매매 가치를 기반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한 장소인 점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고된 기획의도 및 지원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작가들을 “공고되지 않은” “주최자가 해석하는 전시장소의 의미”에 따라 배제할 없습니다. 통상적인 예술 행사의 기획과 작가의 참여 방식을 볼 때, “기획의도나 목적에 반영되지 않은 장소성”은 미리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작가를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동 예술제 작가모집 공고에는 전시장소로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2길 3-4건물”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성평등전주 조선희 소장은 작가 3인 배제를 두고 “반성매매 운동 진영과 성노동 운동 진영이 충돌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 진영 간 다툼은 개인을 예술 활동 기회와 표현의 장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집행하는 사업에서 특정한 운동 진영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 진영의 입장을 견고화하려는 목적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작가 3인 배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작가 3인의 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 라. 차별의 합리성 유무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을 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와 성평등전주는 전시장소 의미를 근거로, 페미니즘 예술제가 반성매매 입장에서 개최된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하면서, 반성매매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진 예술가들의 경우 선정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성매매는 예술제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성매매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배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위 사과문에서 전시장소의 역사와 성격과 같이 언급한 “반성매매 가치”는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과 기준이 일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전시작가 모집 공고에 기재된 사업명(주제), 목적, 기획의도, 신청자격, 심사방법, 제출필요서류 등 어디에도 “반성매매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반성매매’, ‘성착취’, ‘성매매’ 용어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동 예술제 전시계약서 제3조 제3호는 전시내용으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시각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페미니즘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성매매 가치”는 작가 3인을 배제한 후에,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서 비로소 언급되었습니다.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은 성평등, 여성인권, 페미니즘을 지향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예술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평등, 여성인권, 페미니즘에 반하지 않는 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최자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술활동지원 및 전시 기회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된 작가 3인은 성산업 안에 있는 여성을 “피해자로만” 재현하려는 입장과 달랐던 것이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보는 것에 대해 반대하다고 밝힌 적도 없습니다.

#### 마. 소결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공고된 기획의도 및 지원심사기준과 무관하게 사회적 신분 또는 사상을 이유로 작가 3인을 배제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고, 여성주의 작업을 하는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며,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개인/예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4. 나가며

작가 3인은 페미니즘 예술제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남성 중심 미술계에서 여성주의 작업을 하는 작가 3인에게 페미니즘 예술제의 참여는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작가들은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지향하는 바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성산업 종사자라고 밝힐 수 있었고, 특정 페미니즘 사상을 표명하거나 소수자담론에 대한 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그 기획의도와 지향에 반하는 차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최기관이 문제 삼았던 작가의 사회적 신분과 사상은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예술제 취지”, “성평등 가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차별 사건이 페미니스트 여성 예술인에 대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남습니다. 더하여 성산업 종사자가 자신이 겪은 차별을 진정하는 첫 사건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장소에서 개최된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